

설서기관·지방공업서기관·지방환경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, “지방토목기좌·지방기계기좌·지방전기기좌·지방화공기좌·지방환경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”를 “지방토목사무관·지방기계사무관·지방전기사무관·지방화공사무관·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參 照)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100인이내”를 “120인이내”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단서중 “7인이내”를 “12인이내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”를 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“(수당 및 여비)”를 “(수당 및 여비등)”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參 照)

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폐

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위임사무의 교통국관중 20, 22 내지 30, 32 내지 36, 38, 39, 41 내지 43, 46, 47, 64의 수입기관관중 “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”을 각각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②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중 “구청장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, “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”을 “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이 행한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 대한 행위는 구청장의 행위 또는 구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4조(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구청을,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(參 照)

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서울特別市都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